

범죄자 프로파일링의 증거 활용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Evidence Utilization of Criminal Profiling

최 규 환*

차 례

- | | |
|------------------------|----------------------------|
| I. 서론 | IV. 국내 범죄자 프로파일링의 증거 인정 사례 |
| II. 범죄자 프로파일링의 이론적 배경 | V. 결론 및 함의 |
| III. 범죄자 프로파일링의 효용성 고찰 | |

국문요약

각종 미디어에서 수사의 만능해결사로 그려지는 범죄자 프로파일링은 여론의 기대치도 높을 뿐만 아니라 실제 경찰수사에서 연쇄사건 등 다양한 강력사건에서 매우 활발히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실제 프로파일링 서비스를 받는 경찰수사관을 대상으로 한 프로파일링 신뢰도 연구들을 보면 각 연구자에 따라 그 결과가 상반되게 평가되고 있다.

프로파일러 개인의 역량 혹은 사건에 따라 일관되지 않은 분석 결과는 범죄자 프로파일링이 언제나 오류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내포하고, 이는 범죄자 프로파일링이 미디어에서 그려지는 것처럼 항상 옳은 결론을 내리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범죄자 프로파일링의 태생적 한계는 현재까지 범죄자 프로파일링이 전체 형사사법절차 중 용의자 특정, 체포, 자백

등 범죄수사의 영역에서만 활용되었던 원인이 되었다.

이와 더불어 엄격한 증명력을 요구하는 법정은 프로파일링의 오류가능성을 이유로 증거로서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 태도를 보여 왔다.

프로파일링이 이러한 태생적 한계를 극복하면, 수사실무에서 활용되는 영역을 공판단계까지 확장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기대를 충족하기 위해 그 선결조건으로 첫 번째, 프로파일링이 효용성이 있는가, 두 번째, 프로파일링이 유죄의 증거로 활용된 사례가 있는가를 탐색해 보아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프로파일링의 효용성에 관한 국내외 선행 연구를 살펴보고, 향후 객관성과 일관성을 높여 수사에

* 충남지방경찰청 형사과 과학수사계 프로파일러(범죄분석 전문수사관 마스터), 동국대학교 법학박사 수료

서의 효용성과 법정에서의 증명력을 담보하기 위한 한국 경찰의 시도를 소개하였다.

또한, 공판단계에서 범죄자 프로파일링이 최초로 증거능력을 인정받은 사례인 '2002년 충남 아산 갯고개 장기미제 살인사건'을 소개하면서, 프로파일링이 범죄

수사와 재판에서 어떻게 활용되었는지를 검토해 보았다.

그리고 최초로 프로파일링이 법정에서 증거능력을 인정받은 의미와 향후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았다.

◆ 주제어 : 범죄자 프로파일링, 증거능력, 증거활용

I. 서론

2004년 유영철¹⁾ 연쇄살인사건을 필두로 정남규²⁾·강호순³⁾·정성현⁴⁾과 같은 연쇄살인마들과 일명 대전 발바리·마포 발바리·경기북부 발바리로 명명되었던 이중구⁵⁾·김재철⁶⁾·허준⁷⁾과 같은 연쇄강간범의 연이은 등장에 의해 2000년대 중후반의 대한민국 사회는 커다란 충격에

- 1) 2003년 9월 서울 신사동 노부부 살인사건을 시작으로 약 11개월간 서울 각지에서 부유층 노인 또는 출장 마사지사 여성 등 총 20명을 살해한 연쇄살인범.
- 2) 2004년 1월 경기도 부천시의 초등학생 2명을 납치 및 살해한 것을 비롯하여 경기도와 서울 서남부 일대에서 귀가하는 여성들을 살해하는 등 도합 13명을 살해하고 20여명에게 중경상을 입힌 연쇄살인범.
- 3) 2006년부터 2008년까지 경기도 서남부 일대에서 여성 8명을 살해하고 2005년 장모와 처를 붙을 질러 살해하는 등 총 10명을 살해한 연쇄살인범.
- 4) 일명 혜진이·예슬이 사건의 범인으로 2007년 안양시 놀이터에서 놀던 여아 2명을 유괴하여 살해하고, 2004년 군포시 노래방 도우미를 살해한 연쇄살인범.
- 5) 1998년부터 2005년까지 대전·충남 지역을 중심으로 약 150여명의 여성을 강간한 연쇄 강간범.
- 6) 2005년부터 약 1년간 서울 서북부 지역에서 19명의 여성을 성폭행하고 16건의 강절도 행각을 벌인 연쇄강간범.
- 7) 2001년-2009년 사이 의정부·고양 등 경기도 북부 지역에서 약 100여명을 강간한 연쇄강간범.

협사였다. 이러한 괴물들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과 호기심은 순수악 결정체로 이미지화된 ‘사이코패스-Psychopath’, 사이코패스와 극단적 대척점에서 대립하는 ‘프로파일러-Profiler’라는 개념을 대중화 시켰고, 다양한 미디어가 ‘사이코패스’와 ‘프로파일러’의 이야기를 다룸으로써 관심과 호기심을 충족시켰다.

영화나 드라마와 같은 연출된 미디어에서 그려지는 프로파일러는 범죄현장의 남겨진 용의자와 피해자의 상호작용을 통해 현장을 재구성하고 현장분석을 실시한다. 도출된 현장분석을 통해 미확인 용의자의 프로필을 구성하며, 이 프로필을 활용해 유력한 용의자를 선별하거나 검거된 용의자로부터 자백을 획득하는 등 사건의 해결에 매우 결정적인 활약을 한다. 이와 같이 미디어에서 그려진 범죄자 프로파일링 수사기법⁸⁾은 위와 같은 흉악한 범죄자를 검거하는데 필수적으로 활용되는 수사기법이고, 그 효과는 만능적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프로파일링의 효과에 관한 몇몇의 연구는 그 효용성에 관하여 상반된 결과를 제시한다. 먼저 프로파일링의 효과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FBI의 프로파일러 출신인 테텐(Teten)이 1995년에 수행한 연구에 따르면, FBI의 프로파일링은 77% 정도 되는 사건들에 대해 도움을 주었다고 긍정적인 평가를 하는 반면,⁹⁾ 1978년의 고드윈(Godwin)의 경우 프로파일링 결과의 90%는 범죄해결에 도움을 주지 않는다며 그 효용성에 대해 혹평을 한 바 있으며,¹⁰⁾ 다양한 후속 연구들 역시 그 효

8) 2016년 tvn 드라마 “시그널”, 2017년 tvn 드라마 “크리미널 마인드”, 2017년 OCN 드라마 “보이스”, 2009년 KBS 드라마 “아이리스” 등 범죄자 프로파일링 수사기법을 그린 드라마가 꾸준히 제작·방영되고 있다.

9) 임준태, 프로파일링, 대영문화사, 2009, 181쪽.

10) 박광배·배현정, “범죄자 프로파일링의 유용성 : 수사실무를 위한 미시적 활용과 정책평가를 위한 거시적 활용”,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제21권 제1호,

용에 관해 각기 다른 결론을 제시하였다.

이처럼 연구자·연구대상·연구의 방법, 그리고 서비스 제공 주체인 프로파일러 개인의 경험과 능력, 역량에 따라 범죄자 프로파일링의 효용성이 각각 상이하게 평가되고 있다는 점은 범죄자 프로파일링의 결과가 언제나 오류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내포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금까지의 범죄자 프로파일링이 전체 형사사법절차 중 “범죄수사”의 영역에서만 활용되고 “공판단계”까지 활동 영역을 확장하지 못한 것은 일관성과 객관성이 담보되지 않은 프로파일링의 자체적 한계점과 엄격한 증명력을 요구하는 법정의 태도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프로파일링이 위와 같은 자체적 한계점을 극복하고 엄격한 증명력을 요구하는 법정의 요구를 만족시킨다면, 그 활동 영역을 “공판단계”까지 확장 시킬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그 선결조건으로 첫째, ‘프로파일링이 수사기법으로서 일관성과 객관성을 담보하고 있는가?’와 같은 증명력의 문제를 공고히 하여 효용을 높이는 것, 둘째, ‘프로파일링이 피고인의 유죄를 입증하는데 증거로 활용이 된 사례가 있는가?’를 확인하여 향후 유사한 판결에서도 적용가능한지를 탐색 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프로파일링의 효용성과 관련된 대부분의 연구는 위 두 조건 중 첫 번째 조건에 관한 것이며, 연구자들마다 긍정과 부정의 각기 다른 결론으로 평가해 왔으나, 현실수사에서는 프로파일링이 범인을 검거하는데 도움을 주거나 자백을 확보하는 등의 “범죄수사” 영역에서는 유용하고 활발하게 활용되고 있는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이와 같은 프로파일링의 현 상황을 인식하고, 본 연구에서는 프로파일링의 활용 가치를 높이기 위해 앞서 제시한 프로파일링의 효용성에 관한 선행연구와

2001, 12-13쪽.

효용성을 높이기 위한 프로파일러의 시도를 알아보고, 특히 프로파일링이 전국 최초로 공판단계에서 유죄의 증거로 활용된 ‘2002년 아산 갱티고개 장기미제 살인사건’ 사례를 소개하였다. 이를 통해 형사 사건에서 프로파일링이 피고인의 유죄를 입증하기 위해 활용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가능성을 탐색해 보는 것을 본 연구의 목적으로 한다.

Ⅱ. 범죄자 프로파일링의 이론적 배경

1. 범죄자 프로파일링의 개념

프로파일링(profiling)은 “윤곽(혹은 외형)을 그리다”라는 뜻의 프로파일 혹은 프로필(profile)의 명사형 단어이다. 수사현장에서 활용되는 프로파일링에 대하여 게버스(Geberth, 1996)는 범죄에 가담한 개인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수사기관에 제공하려고 하는 과정이라고 정의하였다. 패트릭(Patrick, 2003)은 프로파일링이란 범죄현장의 증거와 행동 형태를 기반으로 범죄자에 대한 성격과 행동단서를 제공하는 노력이며, 범죄자-피해자, 현장, 범행도구의 선택 등과 범죄자의 상관성을 분석하고, 범죄자를 추론하는 과정이라고 정의하였다.¹¹⁾ 그리고 FBI 프로파일러 출신의 테텐은 프로파일링에 대해 범죄의 본질과 그 범죄가 저질러진 방식에 대한 분석에 근거하여 범죄자를 확인하는 방법이라고 정의하였다.¹²⁾ 국내 학자의 정의를 살펴보면, 홍성열(2014)은 증거자료를 통

11) 정재기, “범죄자 프로파일링의 활성화 방안”, 경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9, 4쪽.

12) 임준태, 앞의 책, 143쪽.

해서 얻은 감각과 함께 범죄행위자의 인물, 체격, 습관 등을 헤아리는 것, 범죄행위를 저지른 사람이 어떤 유형의 사람일 것이라는 추정을 하는 것 이라고 프로파일링의 개념을 설명하였고,¹³⁾ 광대경(2004)은 동일인에 의해 저질러지는 범죄는 공통성을 지닌다는 가정에 기초하여 범행전의 준비행적, 범행 행위의 특성, 범행 후의 행적 등을 파악함으로써 범죄자의 유형을 추정하는 수사기법을 프로파일링의 기본 개념으로 설명하였다.¹⁴⁾ 또 김영수 등(2009)은 수사에서 행동과학을 응용하고 사건에 관한 정보 분석으로부터 가능성이 높은 범인상(犯人像)을 도출하는 기법이라고 설명하는 등¹⁵⁾ 다양한 연구자들이 프로파일링의 개념을 설명하였다. 대체로 프로파일링은 범죄현장을 통해 확인 가능한 범죄자의 심리적·행동적 특징을 바탕으로 범인에 대한 다양한 특징을 추론하는 일련의 과정을 의미하고 있다.

수사단계에서 활용되는 프로파일링은 매우 다양한 용어로 언급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범죄자 프로파일링(criminal profiling)의 심리학적 프로파일링(psychological profiling), 행동적 프로파일링(behavioral profiling), 범죄행동분석(criminal behavior analysis), 범죄분석(criminal analysis), 심리분석(psychological analysis), 행동분석(behavior analysis) 등이다. 이 용어들이 혼재되어 사용되는 이유는 국내외 연구자들 각각이 정의한 개념에 부합한 용어를 독창적으로 사용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며, 사용되고 있는 다양한 용어들이 앞서

13) 홍성열, 범죄자 프로파일링, 학지사, 2014, 16쪽.

14) 광대경, “범죄심리에 대한 연구와 경찰수사 활용방안”, 사회과학연구 제10권 제2호, 2004, 63-64쪽.

15) 김영수 외, “효율적 수사지원을 위한 범죄자 프로파일링(Criminal Profiling) 제도의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산업경영논총 제16집, 2009, 137쪽.

제시한 프로파일링의 개념을 모두 적절히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용어의 혼재 사용으로 인한 특별한 혼란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선행 연구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였던 범죄자 프로파일링을 사용하기로 하고, 약칭 프로파일링도 같은 의미로 혼용하기로 한다.

2. 범죄자 프로파일링의 목적

프로파일링은 범행현장에 유류된 다양한 증거와 피해자와의 상호작용을 바탕으로 한 범인의 심리·행동증거가 범죄자의 성격에 기인한다는 전제로 출발한다. 이 전제를 바탕으로 도출된 결론을 활용하여 발생한 사건의 범행 동기를 추론하거나 용의자의 프로파일을 작성하고,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수사방향을 결정하는데 조언을 하는 것을 프로파일링의 가장 기본적인 목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용의자 리스트 중 우선순위 대상자를 선별하거나, 검거를 위한 잠복 지역 선정, 수사 중인 용의자의 진범 여부를 평가하고, 범죄혐의를 부인하는 피의자로부터 자백 획득을 위한 신문전략을 수립하는 등 한정된 수사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사건을 조기 해결하는 것이 프로파일링의 목적에 해당한다.

홈즈와 홈즈(Holmes & Holmes)는 프로파일링의 목적에 대해 ①형사사법체계에서의 범인에 대한 사회적이고 정신적인 평가를 제공하는 것, ②용의자의 소지품을 통한 심리적인 평가를 수사기관 등의 형사사법 체계에 제공하는 것, ③면담기법과 전략을 제공하는 것을 프로파일링의 세 가지 주요 목표라고 제시하기도 하였다.¹⁶⁾

16) Holmes & Holmes. / 이웅혁·김성문 역, 범죄자들의 심리추적 프로파일링, 수사연구사, 2007, 22-25쪽.

3. 범죄자 프로파일링과 증거능력

안타깝게도 범죄자 프로파일링이 국내의 판결을 통해 증거능력을 인정한 전례가 없어 증거능력을 인정받기 위한 전제조건과 증명력에 관한 법원의 입장이 현재까지는 제시되지 않은 상황이다. 이러한 한계로 미국의 형사법정에서 프로파일링의 증거능력을 부정하거나 긍정적인 판례사안을 검토해 봄으로써 관련 쟁점을 이해해 보고자 한다.

1) 증거능력을 부정한 사례

〈표 1〉 State of Ohio v. Richard Haynes(1988) 사건¹⁷⁾

개요	피고인은 취업지원서를 제출하기 위해 방문한 피해자의 아파트에서 피해자가 권한 약과 술을 마시고 잠이들었고, 다음날 아침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구강성교 하는 것을 뿌리치는 과정 중에 피해자를 살해
결과	1심에서 피고인은 정당방위를 주장하였으나 1심은 이를 부정하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하는데 의도성이 있었다는 프로파일링 결과를 증거로 채택하여 유죄를 선고 이후 항소심에서 프로파일링 증거는 과학적 신뢰성 혹은 일반적 승인을 얻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원심의 위법을 인정하여 파기

이사건 항소심은 ①프로파일링 감정인이 프로파일링에 대해 수사기법으로 신뢰성에 긍정하였을 뿐, 법정에서 증거로의 활용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아무런 언급이 없다는 점, ② 프로파일링은 본질적으로 성격증거로서, 검찰 측이 제시한 성격증거에 대해 피고인이 자신에게 유리한 성격증거를 제출할 수 있음에도 피고인이 이를 주장하거나 제출이 없었음에도 검찰 측이 이를 활용한 점, ③피고인이 동성애 행위 후 시간이

17) 권창국, “범죄자 프로파일링 증거의 활용과 문제점에 관한 검토”, 형사정책연구 제13권 제4호, 2002, 134-135쪽.

지체된 후에 피해자를 살해한 행위가 있었던 사실에 기초한 감정인의 의도성이 있다는 의견진술은 배심원에게 부당한 편견을 야기할 우려가 크다고 판단되는 점을 프로파일링의 증거능력을 배척하는 이유로 제시하고 있다.

〈표 2〉 State of Ohio v. Poquemore(1993) 사건¹⁸⁾

개요	피고인은 동거중인 피해자와 말다툼 후 화해를 위해 성관계를 갖던 중 가학적인 방법으로 성행위를 하였는데 이 과정 중 피해자가 갑작스럽게 심장발작이 발생하여 사망
결과	1심은 새디스트 경향이 있는 프로파일링 결과를 긍정하여 강간살인죄의 유죄를 인정하였으나, 항소심은 앞선 Haynes사건을 인용하면서 원심을 파기

이 사건 항소심은 ①피고인이 먼저 원용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위법한 성격증거로서의 프로파일링이 활용된 점, ②찢어진 옷과 같은 현장 증거에서 가학적인 성행위로 추정할 만한 내용이 확인되면 행위자의 성격이 폭력적이고 가학적인 경향이 있다고 피고인의 성격을 단순하게 평가하는 프로파일링 증거는 배심원 등에게 부당한 편견을 야기할 우려가 높은 점을 들어 프로파일링의 증거능력을 배척하였다.

18) 권창국, 위의 글 136쪽.

2) 증거능력을 긍정한 사례

〈표 3〉 Delaware v. Pennell(1991) 사건¹⁹⁾

개요	피고인은 3건의 유사한 수법의 살인혐의로 기소
결과	1심은 3건의 살인사건의 범행 방법 및 물리적 증거를 중심으로 분석한 프로파일러의 법정 진술을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 하였고, 피고인은 항소심에서, 프로파일링은 Frye Test에 의한 일반적 승인을 받지 못하였기 때문에 과학적 증거로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항소심은 피고의 주장을 부정하고 원심을 인정

항소심은 증거로 활용된 프로파일러의 법정 진술은 프로파일러 개인의 경험과 지식에 기반으로 한 것으로, 과학적 증거의 허용성을 기준으로 평가하는 Frye Test²⁰⁾에 해당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피고인의 주장을 부정하고 원심을 인정하였다.

이외에도 총 8건의 살인혐의로 기소된 Louisiana v. Code(1993) 사건, 9개의 범죄사실로 기소된 North Carolina v. Wallace(2000) 사건에서도 프로파일링 결과를 증거로 인정하였고, Legina v. Stagg(1994)²¹⁾에서도 프로파일링 증거를 인정하면서 동시에 daubert standard²²⁾에 바탕하여 과학적 증거의 허용성을 긍정한 바 있다.

19) 권창국, 위의 글, 137쪽.

20) 새로운 과학적 원리에 입각한 증거가 법정에 제출되면 법원은 그 과학증거의 타당성을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전문가 증언을 통하여 타당성을 확인할 수 밖에 없는데, 법원은 제출된 과학증거가 해당 과학 분야에서 ‘보편적으로 승인이 되었는가’를 입증하도록 요구하였다. 이와 같이 보편적 승인을 기준으로 과학증거의 허용성을 평가하는 것을 ‘Frye Test’라고 한다.

21) 권창국, 위의 글, 138쪽.

22) 새로운 과학증거를 허용할 때 기존 ‘Frye Test’가 제시한 보편적 승인이라는 기준 대신 신용성(Reliability)에 대한 심사를 요구하는 것으로, ‘보편적 승인’ 기준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증거를 연방 증거 규칙에 따라 증거능력을 인정할

이상 살펴본 판례를 통해 미 법원이 프로파일링의 증거능력에 대해 어떠한 자세를 취하고 있는지 간접적으로 엿 볼 수 있다. 미 법원은 프로파일러의 전문의견이 얼마나 정확하고 유용한지를 판단하기에 앞서 △프로파일링 수사기법이 신뢰 가능한가, △해당 분야가 전문가들에 의해 보편적으로 승인이 되었는가, △법관이 프로파일링 이라는 새로운 과학증거를 허용할 수 있는가와 같은 증거능력으로서의 가치를 먼저 평가하는 것으로 보인다. 프로파일링 전문의견이 얼마나 정확하고 유용한지, 즉, 증명력과 관련한 평가는 증거능력으로서의 가치를 먼저 인정받은 이후의 문제로 판단된다. 다만 최근의 판례를 통해 프로파일링의 전문 의견을 daubert standard기준에 따라 점차 증거능력으로 인정하는 추세로 변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Ⅲ. 범죄자 프로파일링의 효용성 고찰

1. 효용성을 부정하는 선행 연구

서론에서 논하였듯이 프로파일링은 범죄해결의 만능열쇠가 아니다. 몇몇의 연구에 따르면 프로파일링이 도움이 되는 경우보다 도움이 되지 않는 경우가 더 많다고 한다. 앞서 언급했던 고드윈(Godwin, 1978)은 “프로파일링 결과의 90%는 범죄해결에 도움을 주지 않았다”라고 언급했고, 윌슨과 동료들(Wilson 외, 1997)은 “대부분의 프로파일링은 심각

수 있다는 기준. 전문가의 증언이 신용성에 대한 기준이 되며 과학증거의 허용에 대한 판단을 과학계의 ‘보편적 승인’이 아닌 법관이 할 것을 제시하는 것을 ‘daubert standard’라고 한다.

한 결함을 가진다.”고 주장하였다. 1993년에 발표된 FBI의 한 통계에 의하면 프로파일링이 수사에 활용된 192개의 사건들 중에 88건에서 범인이 체포되었는데, 이 88건의 사건들 중 오직 17%에서만 프로파일링이 실제 범죄해결에 도움이 되었다고 한다.

피니조토와 핀켈(Finizzotto & Finkel, 1990)은 프로파일러와 수사관, 심리학자, 대학생을 대상으로 각 집단에게 수사 자료를 제시 후 프로파일링을 작성토록 하여 정확성을 비교하는 집단 비교 연구를 실시하였다. 이 연구를 통해 “프로파일러 집단이 타 집단에 비해 풍부하고 구체적이며 정확한 예측을 한 것으로 확인되었지만 프로파일을 구성하는 절차는 타 집단과 질적인 차이가 없었다”고 평가하였다. 또한 “프로파일러 집단이 성범죄 사건에서 타 집단에 비해 정확한 프로파일을 제시하였지만, 살인사건에서는 타 집단에서 차이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한다.²³⁾

보다 최근의 연구를 확인하여 보면 스눅과 동료들(Snook 외, 2008)은 “용의자의 일반특성이나 성격적 특성에 대한 프로파일러의 예측이 수사관 혹은 일반인의 예측보다 정확하다는 증거가 없다”고 주장하였다. 프로파일러와 수사관 집단은 일반인 집단에 비해 용의자에 대한 전반적 추정과 신체적인 특징에 관하여 보다 정확하게 예측하였지만, 용의자의 인지과정, 범행형태, 사회경력 및 습성에 있어서는 부정확한 예측을 보여주었다. 다만, 프로파일러 집단과 비프로파일러 집단간의 용의자 예측의 정확도를 비교한 결과, 프로파일러 집단이 모든 측정지표에서 더 정확한 예측력을 보였지만, 스눅 등은 신뢰구간이 지나치게 넓어 결과를 해석하는데 주의를 요구하였다.²⁴⁾

23) 정세중, “범죄자 프로파일링의 효용성 평가”,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4권 제11호, 2014, 688쪽.

24) 정세중, 위의 글, 688-689쪽.

토레스와 동료들(Torres 외, 2006)은 상당수의 법 심리학자나 정신의 학자들이 프로파일링에 대해 회의적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과거의 행동을 분류법으로 사용하여 예측하는 방식의 프로파일링 기법이 현재까지 과학적 지지를 받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²⁵⁾

2. 효용성을 긍정하는 선행 연구

1) FBI 실무자의 효용성 연구

먼저 프로파일링의 효과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FBI의 프로파일러 출신인 테텐(Teten, 1995)의 연구에 따르면, FBI의 프로파일링은 77% 정도 되는 사건들에 대해 도움을 주었고, 45% 가량의 사건을 해결하면서 결정적인 역할을 제공했으며, 17%의 사건에서 미확인 용의자(unknown subject)의 신원을 확인하는데 도움이 되었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또한 FBI 프로파일러 출신인 레슬러와 버제스(Ressler & Burgess, 1985)도 프로파일링의 결과와 수사결과가 평균 76~93% 가량 일치하다고 보고하는 등의 긍정적인 평가를 하였다.²⁶⁾

2) 영국의 CTN Project

구드욘센과 콥슨(Gudjonsson & Copson, 1999)의 보고서에 따르면, 영국에서도 프로파일링의 유용성을 검증하기 위해 CTN Project²⁷⁾라고

25) 남궁현·심희섭, “범죄자 프로파일링 : 과학인가 과장인가?”, 형사정책연구 제 26권 제3호, 2015, 16쪽.

26) 임준태, 앞의 책, 2009, 175쪽.

27) CTN Project는 1995년 출간된 영국의 경찰 리포트로 ‘Coals to Newcastle?’

명명한 연구를 진행하였는데 그 연구보고서가 1995년에 출간되었다. 이 연구에서는 해결된 사건과 제시된 프로파일링의 정확성이 평균 75%로 밝혀졌으나 주목할 만한 사항은 프로파일러 개인 간의 편차가 심하다는 것이다. 정확성이 가장 낮았던 프로파일러는 60%의 정확성을 보인 반면, 정확성이 가장 높았던 프로파일러는 89%의 정확성을 보인다는 것이다. 설문에 참여한 경찰은 대체로 <표4>과 같이 프로파일러의 조언이 유용하다고 평가하였으며, <표5>와 같이 어떤 내용으로 실무적인 도움이 되었는지 답하였다.²⁸⁾

<표 4> CTN Project 프로파일링의 유용성

프로파일링이	예(%)	아니오(%)
사건 해결에 도움이 되었습니까?	14.1	78.3
새로운 수사 방향을 개시하도록 했습니까?	16.3	82.1
제공된 정보에 무엇인가를 더해 주었습니까?	53.8	38.6
수사상 유용한 것으로 증명 되었습니까?	82.6	17.4

<표 5> CTN Project 프로파일링이 수사에 도움이 되는 이유

유용성의 측면	빈도	비율(%)
범죄자의 신원을 파악해 주었다.	5	2.7
사건 혹은 범인에 관한 이해에 도움이 되었다.	112	60.9
수사관의 판단이 옳은지 검증을 해주었다.	95	51.6
용의자를 신문하기 위한 구조를 제공하였다.	10	5.4
기타	17	2.3

Project의 줄임말이다. 경찰관들을 대상으로 조사연구를 수행한 것으로, 문항 중의 일부가 프로파일링의 유용성과 관계된 문항이었다.

28) 임준태, 앞의 책, 181쪽.

박광배(2001)는 위와 같은 CTN Project의 조사를 통해 프로파일링이 사건 해결에는 많은 도움을 주지 못하지만, 수사에 도움을 주는 도구로서 유용성이 있다고 해석하였다. 다만, 범죄자 체포와 같은 사건해결에 유용성이 낮게 평가된 이유에 대해 ①프로파일링이 과학화되지 못해 프로파일러 개인의 경험과 상식, 직관에 의해 결론에 도달하기 때문, ②프로파일러가 접하는 사건이 대부분 특이한 유형의 사건이라 참고할 만한 자료가 부족하며, 부족한 자료에 기초한 분석은 오류가능성이 높기 때문, ③프로파일링은 동일한 범죄자는 유사한 수법을 행한다는 가정에 기초하는데, 기본 가정이 대부분의 범죄자에 부합되는지 검증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평가하였고, 기본적으로 범죄데이터가 과학적으로 전산화되면 프로파일링의 유용성이 괄목할 만큼 증가할 수 있다고 예측하였다.

3) 한국의 효용성 연구

조선대학교의 정세종(2014)은 한국의 범죄자 프로파일링의 효용성을 평가하기 위해 광주지방경찰청 산하 강력팀 형사 113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구체적으로 프로파일링에 대한 기본적 인식은 스눅 등이 2007년 캐나다 경찰관들을 대상으로 한 진술문을 국내의 실정에 맞게 번역하여 활용하였고, 이에 대한 동의 정도를 5점 척도로 평가하였다. 질문은 크게 프로파일링에 대한 일반적 인식과 효용성과 관련한 내용이었다. <표6>은 조사대상자의 프로파일링에 대한 일반적 인식으로, 응답자의 63.7%가 “프로파일링이 가치 있는 수사기법이다”라고 응답하고, 62.8%가 “프로파일러는 범죄 수사에 있어 필요한 존재이다.”라고 응답하였다. 반면, 31.8%만 “프로파일러들은 범죄자의 특성을 정확

하게 예측할 수 있다”에 동의하였고, 15%만이 “범죄자 프로파일링으로 인해서 수사의 오류가 발생할 위험은 없다”고 동의하였다.

〈표 6〉 프로파일링에 대한 일반적 인식

진술문	동의(%)
1. 프로파일러들은 수사관들이 사건을 심도 있게 이해하는데 도움을 준다.	49.6
2. 범죄자 프로파일링은 가치 있는 수사기법이다.	63.7
3. 프로파일러들은 범죄수사에 있어 필요한 존재이다.	52.8
4. 프로파일러들은 사건해결에 도움을 준다.	53.1
5. 수사관들은 비록 사건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더라도 모든 수사 기법을 활용해야만 한다.	77.8
6. 프로파일러들은 일반인들에 비해서 탁월한 기술을 가지고 있다.	53.1
7. 프로파일러들은 수사관들이 범죄자를 특정하는데 도움을 준다.	43.3
8. 프로파일러들은 범죄수사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	58.4
9. 프로파일러들은 범죄자의 심리파악에 능숙하다.	56.6
10. 프로파일러들은 과학적인 기법을 활용한다.	58.4
11. 프로파일러들의 효용성이 과소평가 되고 있다.	40.7
12. 프로파일러들은 수사관들이 미처 접근하기 어려운 정보를 제공해준다.	47.8
13. 범죄수사과정에서 프로파일러들을 통상적으로 참여시켜야만 한다.	42.5
14. 프로파일러들은 범죄자들의 특성을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다.	31.8
15. 범죄자 프로파일링은 법정의 증거로 활용되어야만 한다.	40.7
16. 범죄자 프로파일링은 모든 종류의 범죄에 활용되어야만 한다.	39.9
17. 범죄자 프로파일링으로 인해서 수사의 오류가 발생할 위험은 없다.	15.0

프로파일링의 사건해결에 도움이 되었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113명의 연구대상자 중 13명만이 응답하였는데, 그중 8명(61.5%)가 도움이 되었

다고 응답한 반면, 5명(38.5%)는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응답하였고, 향후 활용가능성에 대해서는 응답자 14명 중 10명(71.4%)이 활용할 것이라고 대답했고, 4명(28.6%)은 활용치 않을 것이라고 응답하였다. 정세종은 이와 관련하여 형사들의 인식과 경험적 판단은 프로파일링의 효용성 평가에 중요한 변수로 고려될 수밖에 없고, 프로파일링을 다시 활용하겠다는 높은 응답률은 프로파일링의 효용성을 긍정하는 방향으로 해석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평가하였다.

경찰청 과학수사관리관실(2017)이 2016년 12월부터 2017년 8월 기간 중 장기미제 살인사건으로 프로파일링 서비스를 받은 전국 미제사건 수사팀 수사관 38명을 대상으로 한 미제사건 분석결과 만족도 설문조사에서 부정평가 11%(매우불만족 3%, 불만족 8%)에 비해 긍정평가가 56%(매우만족 24%, 만족 32%) 약 5배 이상 높게 평가되었으며(중립평가 34%), 활용도 설문조사에서는 부정평가 14%(매우 도움 안 됨 3%, 도움 안 됨 11%)에 비해 긍정평가가 53%(매우만족 24%, 만족 29%)로 4배 가까이 높게 평가되어(중립평가 34%),²⁹⁾ 프로파일링이 수사를 지원하는 도구로서의 유용성이 있다고 평가되었다.

앞서 박광배는 초기의 프로파일러의 경우 프로파일러 개인의 경험과 상식, 직관에 의존하여 결과를 제시하고, 부족한 자료에 기초하여 결과를 제시하기도 하며, 검증되지 않은 프로파일링의 기본가정을 활용하는 문제로 사건해결에 유용성이 낮게 평가된다고 지적하였다.

이러한 지적을 보완하기 위해 현재 대한민국 경찰은 2006년부터 과학적 범죄분석 시스템(SCAS),³⁰⁾ 2009년부터 지리적 프로파일링 시스템

29) 경찰청, 2017년 미제사건 범죄행동분석 사례집, 경찰청 과학수사관리관실, 2017, 408쪽.

30) SCAS(Scientific Crime Analysis System)는 과학적 범죄분석 시스템으로 살

(GeoProS),³¹⁾ 2016년 범죄 데이터 분석 시스템(HOLMES)³²⁾ 등 구축된 객관적 범죄정보를 활용하여 개인의 판단오류를 최소화 시키려는 시도를 하고 있고, 각 프로파일러간 교차 검증을 통해 분석결과의 일관성과 신뢰도를 높이려는 시도를 하고 있어 그 객관성, 신뢰도, 효용성 등이 점차 증가될 것이라 기대한다. 다음 장에서 소개할 아산 갱티 고개 살인사건 해결 사례는 최근 한국경찰이 수행하고 있는 프로파일링의 효용성을 입증하는 대표적인 사례가 될 것이다.

IV. 국내 범죄자 프로파일링의 증거 인정 사례

1. 미제사건 분석 계기

2015년 7월 24일, 살인죄의 공소시효가 폐지되는 내용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통과되어 장기미제 살인사건의 해결가능성이 높아지고, 2015년 ‘나주 드들강 살인사건’, 2016년 ‘용인 교수부인 살인사건’, ‘노원구

인, 강도, 강간, 방화 등 강력 범죄자의 범죄행동정보 및 면담정보를 데이터화 하여 구축하는 시스템이다.

31) GeoProS(Geographic Profiling System)는 지리정보시스템의 공간분석 기능을 적용, 주요 범죄 발생현황은 물론 특정 지역내 다발지역을 분석하여 목검문 등 다양한 범죄예방 및 검거에 활용하고, 각종 수사 전산 시스템과 연계한 특정 지역 내 동종전과, 유사전과자 등 우선 수사대상자 추출 결과를 범죄수사에 활용하거나 연쇄범죄자의 행동패턴을 분석하여 용의자 주거지 예측 및 주 활동 영역 분석 기능을 제공하는 시스템이다.

32) HOLMES(High-Logical analyzer On Large Crime data Management Enquiry System)는 과학적 범죄수사를 지원하기 위한 시스템으로, KICS 원표와 SCAS의 데이터를 이용하여 사건 패턴, 피의자 패턴, 수법범죄 사건 패턴과 같은 다양한 기능을 지원한다.

부녀자 살인사건' 등 장기 미제살인사건이 경찰의 끈질긴 수사 끝에 해결되는 성과를 보이게 되었다. 이러한 법률 변화와 치안상황에 따라 충남지방경찰청 과학수사계에서는 2016년 12월 충남청·인천청·울산청·경기북부청·강원청·충북청·전남청 등 7개 지방경찰청 프로파일러를 중심으로 「중요 미제사건 분석 TF팀」을 구성하였다. 이 TF팀은 DNA 분석·지문검색 등의 과학수사 기법 외 사건 발생 당시 시도되지 않았던 범죄 데이터 분석(HOLMES), 지리적 프로파일링 시스템(GeoProS) 등의 다양한 프로파일링 기법에 의한 지원을 시도할 경우 장기미제사건의 해결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와, 전국의 산재되어 있는 장기 미제 살인사건 간 동일성·연관성·수법 등을 파악하고 분석함으로써 연쇄범죄를 찾아낼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분석 활동을 시작하였고, “2002년 아산 갯티고개 부녀자 살인사건”은 「중요 미제사건 분석 TF팀」이 분석한 첫 장기미제 살인사건이다.

2. 2002년 아산 갯티고개 살인사건

1) 사건개요

2002년 4월 18일 오전 7시, 충남 아산시 송악면에 위치한 갯티고개 등산로 초입에서 등산중인 남성이 한 여성의 시신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를 하였다. 피해자는 아산시 소재에 노래방을 운영하고 있는 40대 여성 A씨로, 당일 새벽 02시 경까지 노래방에서 일을 한 것이 확인되었다. 피해자 부검결과 사인은 경부절창이며 경부절창 이전 경부압박이 있었고, 늑골골절 및 간파열이 있을 만큼 심각한 물리적 폭력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었다.

2) 피해자 차량 발견

4월 18일 저녁, 피해자가 평소 운행하던 승용차량이 피해자가 운영하는 노래방 인근 약 150m 떨어진 곳에서 발견되었다. 차량 내부 확인 결과 △피해자 신발이 조수석에 놓여져 있고, △윈도우 브러시가 파손되어 있고, △뒷좌석 담배꽂이가 발견되고, △조수석에서 혈흔이 확인되고, △기어가 4단에 있는 상태로 주차되어 있는 등 일반적인 주차상태라고 판단하기 보다는 차량 내부에서 이동·다툼 등이 있었음을 추론할 수 있었다.

3) 범행 이후 용의자 행동

피해자의 시신이 발견된 이후 피해자의 카드에서 5개소의 현금인출기에서 7회에 걸쳐 총 195만원이 인출되었다. ①10:35경 충북 소재 ○○은행, ②11:05경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소재 ◇◇휴게소, ③11:06경 ◇◇휴게소, ④11:27경, 대전 소재 ○○은행, ⑤12:40경 전북 소재 △△은행, ⑥12:41경 전북 △△소재 은행, ⑦12:55경 전북 소재 ◎◎은행 등 현금이 인출된 장소와 시간을 통해 용의자의 이동수단 및 도주경로를 추정할 수 있었다.

4) 수사진행사항

통상의 강력사건과 마찬가지로 이 사건 역시 △피해자 행적수사, △피해자 가족 대상 수사, △귀가로 탐문 수사, △CCTV 수사, △치정관계 수사, △피해자 주변인물 금융거래 내역 수사, △통신수사, △고속도로 통행권 수사 등 다양한 방식으로 사건 해결을 도모하였고, 방대한 양의

수사력을 투입하였지만 안타깝게도 용의자의 신원을 특정하지 못한 상태에서 15년이 흘렀다.

5) 프로파일링 경과

2017. 1. 11.~13. 3일간 충남경찰청 등 5개청 8명의 프로파일러들이 15년 전의 위 사건을 재평가하기 위해 충남지방경찰청 과학수사계에 모여 사건기록 4,300여 페이지를 해체하고 원점에서 재검토하며 사건을 재구성하였다. 확인된 객관적 사실을 바탕으로 △피해자와의 면식여부, △범행의 계획성 여부, △용의자 수, △범행의 동기 등을 재평가하여 사건의 성격을 이해해보고자 하는 것이 이 사건 프로파일링의 목적이었으며, 이 사건에서 확인된 객관적 사실과 이를 바탕으로 한 추론은 아래와 같다.

〈표 7〉 피해자 사인

객관적 사실	추론사항
피해자에 대한 심각한 폭행 (늑골골절·간파열) 목조름(0.7cm 사흔관찰) 행위 피해자를 경부절창으로 살해	용의자는 끈과 칼을 이용 → 계획적 범죄 가능성 지시

〈표 8〉 피해자 차량 정보

객관적 사실	추론사항
피해자 운전석 → 조수석 이동	최초 용의자가 조수석과 뒷좌석 탑승 → 면식 범죄자 가능성 지시
운전석의 방석이 조수석 방향으로 밀려 있음 피해자의 신발은 조수석 바닥에 위치한 상태	운전석에 있던 피해자가 차량 안에서 조수석으로 이동하였고, 조수석에서 신발이 벗겨짐 → 폭행이나 협박 등에 의해 피해자 이동

객관적 사실	추론사항
피해자 차량 내부에 우측 레버가 부러져 있음	좁은 차량 내부의 과격한 움직임에 의해 차량 내부 자재 파손 → 차량 내부에서 심각한 신체 움직임(폭력 및 반항) 발생
조수석에 불상자의 혈흔이 검출	피해자가 완벽히 제압되지 않은 상태의 다통 과정에서 용의자가 상처를 입었을 가능성
기어가 4단에 놓여져 있는 상태로 주차	주차 후 현장을 급하게 이탈하려는 상태를 의미
피해자 운영 노래방 인근 주차	차량 내 공격 흔적 및 피해자 운영 노래방 인근으로 복귀 → 범행 및 사체 유기에 피해자의 차량이 사용되었음을 의미

〈표 9〉 피해자 행적 정보

객관적 사실	추론사항
피해자 퇴근시간에 차량 탑승	피해자 퇴근 정보 인식 → 면식 범의자 가능성 지지

〈표 10〉 용의자 이동 정보

객관적 사실	추론사항
아산 → 전북 △△까지 약 2시간 20분에 걸쳐 현금 인출 (고속도로 이용)	도주시 용의자 차량으로 이동
현금 인출시 모자·마스크 준비	계획적 범죄 가능성 지지
현금인출	피해자 사망 전 비밀번호 획득 시도 → 금전 목적 범행 가능성 지지

분석에 참여한 프로파일러들은 위와 같은 추론을 통해, 위 사건의 성격은 아래와 같이 분석하여 사건을 재구성하고 보고서를 작성, 수사팀에 전달하였다.

〈표 11〉 분석 사항

면식여부	용의자 수	범행동기	계획성
면식관계	2인 이상	강도목적	계획
범행 재구성	① 용의자들은 피해자가 영업을 마친 02 : 30경 피해자가 차량에 탑승하는 시점과 근접하여 조우하여 피해자의 차량 조수석과 뒷좌석에 탑승한 후, ② 용의자들이 칼과 끈 등의 제압도구를 이용하여 1인은 뒷좌석에서 신체 및 제압도구를 이용하여 위협, 1인은 운전석 쪽으로 탑승하면서 피해자를 조수석 쪽으로 밀치는 과정 중 폭행과 반항이 있었을 것으로 판단되며, ③ 차량을 갱티고개 인근으로 이동하여 현금 및 카드를 강취하고 비밀번호를 획득하려는 시도중 추가 폭행이 있었을 것이며, ④차량 내부 다량의 혈흔이 없는 점으로 보아 피해자 시신 유기지점에서 폭행이나 살해가 이루어졌고, ⑤ 피해자의 차량을 타고 피해자 영업장소 인근으로 복귀 후, ⑥ 자신들이 타고 온 차량으로 옮겨 탄 후 고속도로로 도주 하면서 현금을 인출		

6) 사건 해결

이 사건은 피해자 차량에서 채취한 혈흔과 담배꽂이에서 동일한 유전자가 확보되었기 때문에 해결가능성이 있는 사건이었다. 담당 수사팀은 프로파일링 보고서를 토대로 기존 용의자들에 대한 검토를 하던 중 2013년 참고인 조사를 받았던 51세의 B를 주목하였다. 범인은 아산에서 범행을 하고 무주방향으로 도주하였는데, 마침 무주의 고속도로 통행권중 하나에서 B의 쪽지문이 확인되었기 때문에 수년 전 용의선상에 오른 인물이었다. B는 강도 전력이 있는 사람인데다가 피해자가 운영하는 노래방에서 명함이 발견되어 면식 관계로 추정되었지만 피해자 차량에서 발견된 유전자와 일치하지 않아 용의선상에서 벗어난 상태였다.

그러나, 만약 공범의 존재가 있다면 범인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할 수 있었기에 이를 입증하기 위해 담당 수사팀은 통행권의 원본을 확인하고 용의자의 동선과 B의 동선이 얼마나 일치하는지 수회 실험을 통해 입증 하였다. 이후 수사팀은 B를 체포하는데 성공하였고, 완강히 범행을 부인하던 B는 7시간의 끈질긴 추궁 끝에 결국 범행을 자백하고 유전자의 주인인 직장동료 C의 존재를 실토하였다. 수사팀은 공범 C에 대한 소재를 확인한 끝에 추가 검거, 발생 15년 만에 사건을 해결하고 진실을 밝힐 수 있게 되었다.

3. 프로파일링 보고서의 활용

담당 수사팀은 다양한 방향으로 전개되어 있는 수사방향을 프로파일러의 분석 의견에 따라 재설정하였다. 치정, 원한 등 다른 가능성에 대하여 후순위로 정리하고, 프로파일링 보고서의 분석을 토대로 강도 목적을 중심으로 방향을 설정하고 용의자 리스트를 검토하는 과정 중 B 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재선정하였다. 또한 B를 체포하기 위한 영장신청에 프로파일러의 보고서를 활용함으로써 B의 체포 당위성을 강조하였고, 자백을 받은 이후 B와 C의 범행을 입증하기 위해 프로파일링 보고서를 증거관계로 채택하여 검찰에 송치하였다.

이 사건 범인들은 경찰의 철저한 수사로 인한 B의 자백과 C의 유전자라는 명백한 과학적 증거가 확보된 사건이기 때문에 재판의 쟁점은 유무죄를 다투는 것이 아닌 양형을 다투는 것이었다. 검사는 프로파일링 보고서를 포함한 경찰 수사 결과를 토대로 계획적이고 잔인한 범행이라며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반면 변호인은 이 사건 피고인들이 막연한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있으나 피해자를 미리 선정하여 범행한 것이

아니라 당일 피해자의 노래방에 있다가 우발적으로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하였고, 살인 역시 금품 등을 강취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저항과 발각 우려 때문에 우발적으로 살해한 것이기 때문에 무기징역은 과한 처벌이라는 논리로 맞섰다.

이에 대해 법원은 모두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였고, 프로파일링 보고서를 증거의 요지로 판결문에 적시하였다.³³⁾ 이에 피고인들은 계획적으로 범행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하였지만, 항소심³⁴⁾과 대법원³⁵⁾은 피고인들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의 형을 유지하여 무기징역이 확정되었다.

4. 프로파일링 보고서 증거 인정의 의미

1990년대 후반 급변하는 사회양상에 따라 다양해지는 강력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 경찰이 2000년 2월 서울지방경찰청에 범죄분석팀을 설치하여 최초의 프로파일러를 배치한지 18년이 흘렀다. 이후 2005년 ~ 2017년 사이 7회에 걸쳐 총 60명의 전문가가 채용되었고, 2018년 현재는 각 지방청별로 1~4명씩 39명의 프로파일러가 배치되어 근무하고 있다. 약 20여년의 짧지 않은 역사 속에서 경찰 프로파일러들은 주어진 여건에서 나름의 노력을 통해 강력사건 및 미제사건 프로파일링·진술분석·행동분석·심리부검 등 사건 수사 지원을 위한 프로파일링 활동을 지속하여 왔고, 많은 사건의 원활한 흐름과 해결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주었다고 평가한다. 하지만 프로파일러가 제시한 프로파일링 보

3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 11. 22. 선고 2017고합142호 판결.

34) 대전고등법원 2018. 4. 13. 선고 2017노508호 판결.

35) 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8도6310 판결.

고서가 수사단계에서 참고자료로만 활용될 뿐, 범죄자의 유죄를 입증하기 위한 증거자료로 활용되지는 못하였다. 하지만 장기미제 살인사건으로 남아있던 갱티고개 살인사건 해결 사례는, 프로파일링이 단순히 수사단계에서만 유용하게 활용되는 것이 아니라 범죄자의 유죄를 입증하는데 프로파일링이 역할을 할 수 있고 더불어 프로파일링의 활용 영역을 공판단계 까지 확장시켜 준 상징적인 사례라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V. 결론 및 함의

본 연구는 범죄자 프로파일링이 일관성과 객관성이 담보되지 않아 효용성이 부족하다는 인식이 있고, 이로 인해 당연히 법정에서 증거로 활용될 수 없다는 비판을 반박하는 사례이다. 수사기법으로서의 프로파일링이 장기미제사건을 해결하는데 있어 매우 유용하게 활용될 뿐만 아니라 법정에서 유죄의 증거로 최초 인정되었다.

초기의 프로파일러들이 다양한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제공한 프로파일링 서비스는 때때로 혹은 빈번히 오류를 일으켰을 수 있으며, 이러한 불완전한 서비스를 받은 수사관들은 범죄자 프로파일링에 대해 비과학적으로 인식되었을 것이고, 비판적인 태도를 가질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 생각한다. 그리고 이러한 수사관들의 비판적 태도는 미디어의 연출된 프로파일러의 이미지와 상당한 괴리감을 느꼈을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의 범죄자 프로파일링은 과거처럼 특정 프로파일러 한 사람의 개인적 경험과 직관에 의해 결정되고 생산·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심리학·사회학·범죄학 등 다양한 학문적 배경과 경험을 가진 프로

파일러 수명이 사건에 대해 토의하면서 합리적인 분석 결과를 생산하기 위해 노력하고, 수사팀의 논리를 보완·보강하거나 전문가 집단으로써 의견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수사팀과의 협업 통해 방향을 조정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프로파일러 간의 혹은 프로파일러-수사팀과의 협업은 사건이 해결되는데 많은 시너지를 발휘하고 있고, 프로파일링이 수사기법으로의 유용성뿐만 아니라 공판과정에서 법관의 자유 심증을 형성하는데에도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본 갱티고개 살인사건의 증거 인정 사례가 증명한 것이라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향후 프로파일러들은 다양한 형사사건에 있어서 용의자 유형추론, 정신건강 평가, 진술분석, 행동분석, 심리부검과 같은 다양한 프로파일러의 수사지원 사례가 본 갱티고개 살인사건처럼 수사 실무에서의 활용뿐만 아니라 증거로서 활용될 수 있음을 염두에 두고 증명력을 공고히 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경찰청에서는 프로파일링 보고서가 우려와 같이 개인의 경험과 직관에 의해 편향되지 않도록 교차 검증할 수 있는 규정과 시스템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

물론 범죄자 프로파일링은 객관적인 사실에 기반한 추론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기타 과학적 증거처럼 단독증거로 활용될 수는 없다는 태생적 한계를 가지지만, 향후 다양한 형사사건 재판에서 기타 과학적·물리적 증거와 함께 피고인의 유죄를 입증하는데 활용되거나, 범죄의 계획성과 같은 피고인의 의도를 평가하는데 정황 증거로서 고유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해 본다.

〈논문접수 : 2018. 10. 14, 심사개시 : 2018. 11. 19, 게재확정 : 2018. 12. 11.〉

참 고 문 헌

I. 국내문헌

1. 단행본

임준태, 프로파일링, 대영문화사, 2009.

홍성열, 범죄자 프로파일링, 학지사, 2014.

Holmes & Holmes. / 「범죄자들의 심리추적 프로파일링」, 이웅혁·김성문 (역), 수사연구사, 2007.

2. 논 문

김영수 외, “효율적 수사지원을 위한 범죄자 프로파일링(Criminal Profiling) 제도의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산업경영논총 제16집, 2009.

곽대경, “범죄심리에 대한 연구와 경찰수사 활용방안”, 사회과학연구 제10권 제2호, 2004.

권창국, “범죄자 프로파일링 증거의 활용과 문제점에 관한 검토”, 형사정책연구 제13권 제4호, 2002.

남궁현·심희섭, “범죄자 프로파일링 : 과학인가 과장인가?”, 형사정책연구 제26권 제3호, 2015.

박광배·배현정, “범죄자 프로파일링의 유용성 : 수사실무를 위한 미시적 활용과 정책평가를 위한 거시적 활용”,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제21권 제1호, 2001.

정세종, “범죄자 프로파일링의 효용성 평가”,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4권 제11호, 2014.

정재기, “범죄자 프로파일링의 활성화 방안”, 경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9.

3. 기타

경찰청, “2017년 미제사건 범죄행동분석 사례집”, 경찰청 내부자료, 2017.

II. 외국 문헌

1. 단행본

Geberth, V. J., *Practical Homicide Investigation : Tactics, Procedures and Forensic Techniques 3rd ed*, FL : CRC Press, 1996.

Gudjonsson, G. & Copson, G., The role of the expert on criminal investigation. In J. L. Jackson & D. A. Bekerian (Eds.), *Offender Profiling : Theory, Research and Practice*, New York : Wiley, 1999.

Osterberg, J. W. & Ward., R. H., *Criminal Investigation : A Method for Reconstructing the Past*. OH Cincinnati anderson publishing Co, 2000.

2. 논문

Pinizzotto, A. J. & Finkel N. J., “Criminal Personality Profiling : An Outcome and Process Study”, *Law and Human Behavior*, Vol. 14, 1990.

Snook, B., Eastwood, J., Gendreau P., Goggin, C., Bennel, C. and Cullen, R. M, “Taking Stock of Criminal Profiling : A Narrative Review and Meta-Analysis”, *Criminal Justice and Behavior*, Vol.34, 2007.

Snook, B., Cullen, R., Bennel, C., Taylor, P., & Gendreau, P., “The criminal profiling illusion : What’s behind the smoke and mirrors?”, *Criminal Justice and Behavior*, Vol.35, 2008.

Torres, A., Boccaccini, M., & Miller, H., "Perceptions of the Validity and utility of criminal profiling among forensic psychologists and psychiatrists", *Professional Psychology : Research and Practice*, Vol. 37(1), 2006.

< ABSTRACT >

A Study on the Evidence Utilization of Criminal Profiling

Choi, Kyu-Hwan

The criminal profiling, which is portrayed by various media as a panacea for investigation, is not only highly anticipated by the public, but is also actively used in a variety of violent crimes such as serial crimes of police investigations.

However, according to the studies on the reliability of profiling researchers in which the police investigators participated, the results are controversial.

Inconsistent analysis results, depending on a profiler's ability or crime, imply that criminal profiling is always error-prone, which means that criminal profiling does not always come to the right conclusion as depicted in the media.

The inherent limitations of such criminal profiling have been caused so far by the use of criminal profiling only in the areas of criminal investigations, such as suspect-specific, arresting, and confession.

In addition, the court, which calls for strict verification, has shown no recognition of value as evidence, citing the potential for error-proneness of profiling.

If profiling overcomes these inherent limitations, it is expected that the areas used in the investigation can be expanded to the level of trial.

To meet these expectations, the first is to explore whether profiling is useful, and secondly, whether profiling has been used as evidence

of guilt.

To this end, this study examined prior research at home and abroad on the effectiveness of profiling, and introduced an attempt by the Korean police to ensure effectiveness in investigations and probative forces in court by enhancing future objectivity and consistency.

In addition, we introduced the case of "Cold murder case Gangti Gogae in Asan" in which criminal profiling was first recognized as admissibility of evidence during the trial, and examined how profiling was used in criminal investigations and trials.

And we looked at the meaning of profiling being recognized as admissibility of evidence for the first time in Korea, and what role it could play in the future.

◆ **Key words** : Criminal profiling, admissibility of evidence, Evidence utilization